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서탄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23년 07월 26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명 생년월일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장**	장** 1963-01-20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고덕북로	재등록
김**	김** 1966-07-02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재등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담당자 : 조희승 문의전화 : 031-8024-6791)

2023년 07월 19일

서탄면장

